

의안번호	제 2764 호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의 결 사 항	
------------	--

고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4. 4. 1.

고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2764 호
----------	----------

제출연월일: 2024. 4. 1.

제 출 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은 OECD 38개 회원국 중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며, 자살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문제로서 인식이 필요함. 이에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통해 고성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국가연령별 표준화 자살률 23.6명, OECD 평균 11.1명의 2배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나.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조, 제2조의2, 제10조, 제13조, 제17조
 -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성별영향평가: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 복지지원과-8119(2024. 2. 23.) 검토의견 반영

조례안	수정안(검토의견)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해당조항: 제3조제1항(자살 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input type="checkbox"/>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input type="checkbox"/> 제3조제1항에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라는 문구를 추가함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공고 제2024-3호

가) 예고기간: 2024. 2. 13. ~ 2024. 3. 4.(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4. “자살예방”이란 자살을 유발하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으로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시행계획의 전략 및 추진과제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4.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지원 및 사후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등) 군수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상담·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건강증진과장 최 문 숙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약칭: 자살예방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00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2. “자살위해물건”이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물건을 말한다.
3.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4. “생명지킴이”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5. “자살예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가. 생명존중문화 조성

나. 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홍보

다.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라. 자살예방체계 구축

마. 자살위험자 발견 및 사후관리

바. 자살실태조사 및 심리부검

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아.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그 밖에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2. 6. 10.>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022. 6. 10.>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119구조대의 구조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 방법 및 내용,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횟수 및 결과 제출 절차와 제5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살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00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의 위탁)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5. 29., 2022. 12. 9.>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 기관 및 단체의 전문성·인력·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 12. 9.>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 12. 9.>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 6. 11.>]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2023. 6. 13.] [법률 제19464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4.>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 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